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15의거 관련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7.20.)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3·15의거 발생 지역 범위의 규정(안 제2조)

- 법 제2조에 규정된 ‘마산지역’을 3·15의거 발생 당시의 경상남도 마산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

나.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3·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기간·방식 및 이송에 관한 규정
- 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안 제8조)

-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15의거 조사 관련 결과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라. 공무원의 파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9조, 제10조)

- 진실화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경상남도과 창원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인력 지원 가능하다.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2조)

- 3·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사정리법 시행령」을 준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산지역의 범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마산지역”이란 3·15의거 발생 당시 경상남도 마산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진상규명 신청) ① 3·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나 경상남도 창원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창원시는 이를 즉시 진실화해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재신청)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진상규명 조사) ① 3·15의거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은 「과거사정리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기간으로 하되,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창원시로부터 진상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진실화해위원회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진상규명 조사결과 통지)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종료된 경우 조사결과를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결과보고서 공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공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3·15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실화해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

2.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3·15의거 기초사실의 조사

③ 제2항의 업무처리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및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3·15의거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사정리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3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15의거에 관한 교육·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의 기념사업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67